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 05월 0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담당자 : 안재규

문의전화 : 031-5189-6233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윤 *식 1961-03-25	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55번길	무단전출
황 *재 1997-12-06	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	무단전출
손 *군 1986-02-04	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역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4년 04월 23일

남양읍장 인

